공 개

의안번호	제 10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의결사항

대형 여전·저축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방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1. 의결주문

대형 여전·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형 여전·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유도 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3. 의결내용

1 대형 여전·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 도입

○ **대상 :**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 **절차** :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범운영**

*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

○ **기간** : 금융위 의결일('26.1.14일) 이후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법령상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26.7.2일)

- 단, 시범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6.1.14일~4.10일) **설정**

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당국의 **사전 컨설팅** 실시

○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 **시범운영 참여**를 통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으로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면제***

*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상 금융회사가 위법행위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의 감면이 가능하며 이를 적극 활용

2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조치

가. 적용기간 : 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동 방안의 금융위 의결일 이후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6.7.2일까지)

나. 적용내용 :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6.1.14일~4.10일)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7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감독혁신국
연 락 처	02-2100-2824	02-3145-8310